계엄과 미군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2) 헬기의 60분
3) 수도방위사령부의 120분
1. 비행제한구역
2. 비행승인
3. 120분
4) 비행협조센터 가디언의 60분
5) 중앙방공통제소의 시간
6)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시간
7) 결론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계엄의 시행은 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엄군에 의해 국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계엄군은 별도로 편성되거나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軍)이 계엄군의 임무를 겸직한다. 따라서 병력을 지휘·감독하는 작전지휘권(Operation Command)[1]과 계엄군의 운용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2]

합참이 2년마다 발간하는 「계엄업무편람」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것이다. 전시준비태세인 데프콘1이 발령되는 상황에서 병력의 기동이 시작된다. 한미연합작전으로 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하면서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에 이양된 자유화지역에 대하여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계엄의 개념이다. 한국전쟁경험에 의하면 적국이 아닌 남한 내에서의 계엄도 시행된다. 어쨌든 연합사차원에서는 전시계엄만이 가정되어 있다.[3]

미국은 북한 진입을 국제법적 점령으로 보고, 한국은 국내법적 수복으로 본다. 때문에 미국은 국제점령법을 적용하고, 한국은 국내계엄법을 적용하려 한다. 이와 관련 한미상호간에 구체적인 효력관계를 합의한 바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4] 이러한 미 합의상태가 어떤 상황을 몰고 오는지는 한국전쟁기간 이미 현실화된 적이 있었다. 함흥시청 접수과정에서 한국군과 미

1) 작전지휘권은 군령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에 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2000년에 폐지된 국방부훈령 제57호 '상부조직기능체계 및 배분규정'에서 군정과 군령을 정의한 것이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제1조에서 국방장관은 군정 및 군령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9조에서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어 군령권자가 누구인지만 명시하고 있다.

2) 김미애, 「계엄상황 하 군사행정 업무에 대한 연구」, (초당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논문, 2014), p.22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비상대책회의)는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 군사상 필요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전시 계엄을 준비하는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것이 전시 계엄 시행의 가정'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없다는 게 계엄실무편람의 해석이다.(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2023), p.90)

4) 김응수, 「북한 자유화지역 계엄 시행 초기 실효성 배가를 위한 대안적 논의 정부기관 통치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Vol.6 No.2, (미래군사학회, 2017), p.94

군사이의 심각한 위기로 발화될 뻔 했었던 것이다.[5] 전시작전통제권 내에서의 전시계엄조차 이런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하물며 이번과 같은 평시의 비상계엄은 전시준비태세 단계의 상향으로 병력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병력동원으로 전시준비태세 단계가 격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으로서는 군사동맹관계에서의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 미군의 전시작전권은 환수되지 않았고 정전시작전권도 완전히 이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통제권을 벗어난 계엄에는 반발하다가도 막상 계엄이 성공했을 때는 계엄세력의 편에 서는 신속한 태세전환을 반복해왔다. 1952년 이승만의 계엄령에 대해 클라크유엔사령관은 강력히 반발하고 이승만 제거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손을 들어줬다. 1961년 5.16비상계엄에 대해 매그루더 유엔사령관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미국은 박정희의 손을 들어줬다. 1980년 5.18계엄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전두환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렬의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의 첫 반응은 전혀 몰랐고 당황스럽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확고한 한국에서, 이에 대한 모반이나 다름없는 계엄은 자신들의 관리통제실패를 의미함으로 놀랍고,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미국이 한국 상황을 모르기 어려웠고[6] 적절한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던진다. 미국은 도·감청만 하는 제3자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체제에 깊숙이 결합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동조 내지 방조한 책임이 있듯이, 미국 역시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이번 계엄에 책임져야할 영역이 없는지 가려보고자 한다.

우선 1994년 정전시작전권환수에서도 제외되어 여전히 한국공군에 대한 정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오산기지의 미7공군을 주목해 본다. 특전사 특수항공작전단 602항공대대의 헬기이동과정을 상세히 분석해보고 왜 미7공군의 책임을 의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헬기의 60분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부승찬의원은 특전사 특수항공작전단장 김새운, 수방사령관 이진우,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7]

> 부승찬: 602항공대대로 10시 49분경에 긴급비행 임무를 유선으로 접수했다고 수방사에서 말해요. 요청한 적 있죠. R75지역 헬기 비행….

---

5) 유원식, 『5.16-혁명은 어디로 갔나』, (서울: 인물연구사, 1987), pp.195-199참조

6) 김병주·박선원의원 인터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남 전의원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미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방송 끝나고 나서 알려 준 건데 미8군이 서울로 출동 준비했었다.…새벽2시 정도 돼서 연합사부사령관 하고 연합사령관이 통화를 했더라.… 연합사령관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새벽 2시에나 통화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전화할 필요가 없었다거나…그동안 이미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연합사령관에게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연합사부사령관 하고 접촉하면 오히려 어떤 내용을 연합사가 알고 있는지 보안만 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유투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1:28:05-1:30:16)/https://www.youtube.com/watch?v=mR-N84783DY)
다음과 같은 증언도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한테 들은 얘기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거기서 미군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들이 대통령실 안에 들어와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문희정, 「"외신, 윤 담화 긴급 타전…끝까지 간다는 말에 충격"-"미, 비자업무 중단 '괘씸죄'…대통령실에서 미군 회의하는 모습 목격되기도」/ https://www.youtube.com/watch?v=Jl8V01-jxMo)

7)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2024년 12월 10일 https://www.youtube.com/watch?v=b7DMZN3ln5A

단 장 : 예 확인하겠습니다.

부승찬: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헬기는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수방사 어디에서 받아요. 합동방공작전통제소 맞죠.

단 장 :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그래야만이 R75(*비행제한구역)에 들어올 수 있죠.

단 장 : 그렇습니다. 예

부승찬: 승인권은 수방사에 있는 거죠.

단 장 : 그렇습니다.

부승찬: 그래서 수방사는 승인을 안 해줬죠. 보류했고.

단 장 : 그렇습니다.

부승찬: 그러다 보니까 비행이 늦어진 거죠.

단 장 : 그렇습니다.

부승찬: 근데 이후에 특수항공작전단에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다가 승인건의요청을 해요. 여기서 육군본부 정보참모작전부장 조종래 소장이 왜 나옵니까? (*다음은 부승찬의원이 공문내용을 그대로 읽는다)

'1.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 대령 김문상 2. 이후에 수방사에서 승인을 보류하니까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에게 안보폰으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3. 차후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안보폰으로 12월 3일 화요일 23시 31분경에 R75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헬기의 R75 최초진입시간은 23시 43분경 입니다.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대령 김문상 전화번호 02 524-3330'

총장님! 월권 한 거예요

수방사령관: 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75는 평상시에 제 명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R75에 대한 권한의 통제는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작전처장이 계엄사에 있는 참모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온 문서였습니다.

계엄사령관: 당시에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과정 속에 있었을 때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는지 도착지가 어딘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막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저 위에 보니까 작전이 막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C4I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긴급상황이라서 들어가는 헬기인가 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부승찬: 계엄사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한이 있어서 비행제한구역에 헬기 진입을 승인해줍니까? 정보 작전참모부장 인사명령서를 갖고 와요.

이 문답의 골자는 특전사 항공작전단이 수방사 합동방공작전통제소에 서울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헬기비행승인을 요청했는데 수방사가 규정에 맞지 않아 보류하는 사이 특전사가 다시 계엄사령관에게 연락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비행승인과정에서의 혼선으로 계엄군의 헬기는 결국 60분정도 지연되었다. 혼선의 결과가 빚은 60분은 한국의 민주주의에겐 천우신조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최소한 180분이란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수도방위사령부의 120분

1. 비행제한구역

먼저 단어의 정의를 확인하고 가자. 서울과 수도권에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있다. “비행금지구역(P73)”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서울 도심에 설정된 구역이며, P는 금지(Prohibit)의 약자이다. “비행제한구역(R75)”는 「항공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는 항공기를 사전에 식별하고 경고하기 위한 통제공역이다. R은 제한(Restrict)의 약자이다. “P73 시계비행로”는 P73 인근지역에서 헬기가 시계(視界)비행을 할 경우 P73 비행금지구역 침범방지를 위하여 지상의 유명장소지점을 연결하여 설정한 비행로를 말한다. “한강회랑”은 김포공항과 노들섬 간을 운항하는 헬기를 위해 설정된 노들섬 회랑과 용산헬기장에 입·출항하는 헬기를 위하여 설정된 용산회랑을 말한다. 다음은 약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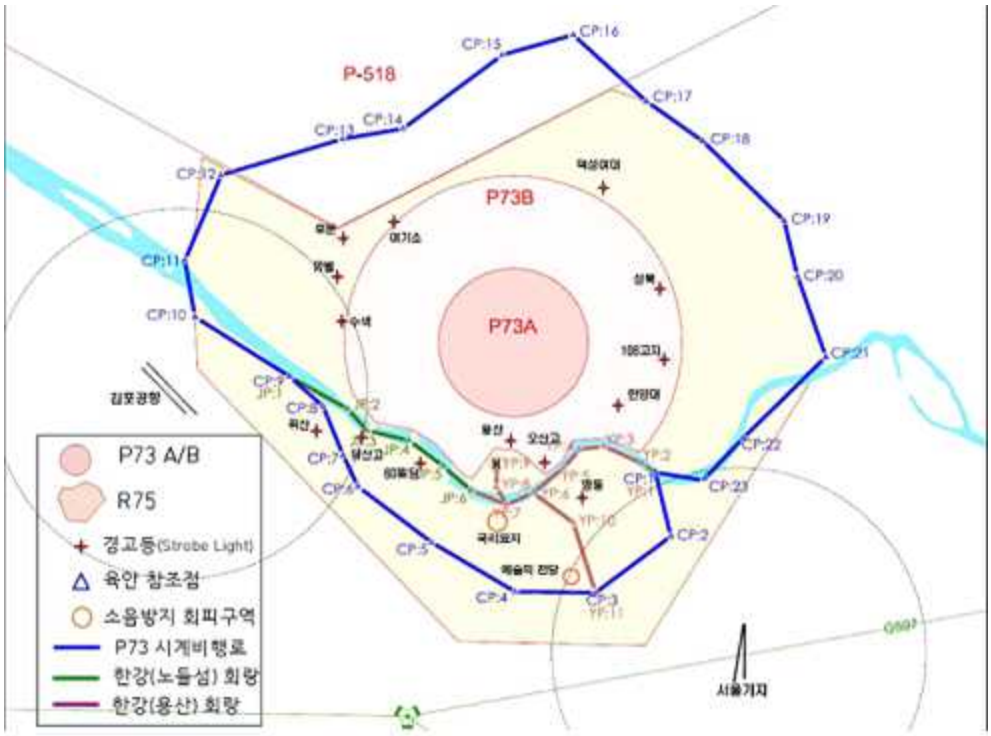

그림1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시계비행로, 한강회랑의 약도

2. 비행승인

대한민국 전자항공정보 간행물 「시계비행규칙」[8]에 의하면 비행제한구역(R75)으로의 비행을 위해서는 비행계획서 제출과 승인이라는 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먼저 헬기조종사(부대)는 비행시작 2시간 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통제소(JAOC)[9]에 비행계획서를

8) 대한민국전자항공정보간행물「시계비행규칙」(2017.2.16.발행)
https://aim.koca.go.kr/eaipPub/Package/2017-02-16/html/eAIP/KR-ENR-1.2-ko-KR.html

9) 수도권합동방공작전통제소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전송되는 수도권지역 침투항적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도권지역의 합동방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군, 육군의 합동기구로서 수도권지역의 방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주로 육군 단거리대공무기통제소 및 비행협조본부(FCC)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공중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 내에서 단거리대공무기부대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방위사령부 JAOC는 접수된 비행계획을 검토 후 비행승인 여부를 비행시작 1시간 30분전까지 신청자에게 구두로 통보해야한다. 그런데 최종비행승인을 한 것은 수방사가 아닌 계엄사였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시간은 11시 25분이었다.[10] 계엄사령관은 임명 뒤 합참본부 지하4층에 내려가 지휘통제장비(C4I) 하나없이 상황실을 꾸리는 논의를 하다 전화를 받았다. 계엄사령관이 육군정보참모작전부장 조종래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승인허가를 지시한 것은 11시 25분으로부터 6분만인 11시 31분이다. 그러나 이 비행승인은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불법이 구성된다.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법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계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계엄지역의 행정·사법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사령부직제(대통령령 제31910호) 제2조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한은 그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해진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국방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 비행제한구역R75 비행승인권은 국방장관의 권한으로 수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다. 따라서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방장관의 위임을 받은 수방사령관이 계속 비행승인권을 행사함이 적법하다. 당시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막 시작한 단계였으므로 자신이 지휘·감독할 소속직원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계엄사령관 자신도 아닌 육군정보참모작전부장에 의해 비행승인권이 행사된 것, 또한 불법·무효임이 의심된다.

3. 120분

707특임단장 김현태는 계엄발표 직후인 22시 31분 특전사령관의 출동지시를 받았다. 602항공대대도 출동지시를 받고 22시 49분경 비행계획을 수방사에 신청했다. 그 뒤 신청과 보류를 반복하다 비행승인 없이 무단으로 23시 20분경 헬기들을 이륙시켰다.[11] 23시 31분경에 비행제한구역(R75)진입이 불법이지만 승인되었다. 1번 헬기가 R75진입보고지점인 청담대교에 진입한 시간은 23시 43분경으로 비행신청 후 56분, 이륙 후 21분, 비행승인 후 12분 만이었다.

규정에 의하면 헬기 조종사나 부대는 비행시작 2시간 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JAOC에 비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헬기부대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시간은 22시 49분으로 정상적이라면 이륙시간은 이로부터 2시간 뒤인 24시 49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전사는 1시간 30분이나 이른 23시 19분에 무단으로 비행을 시작했다. 규정을 위반한 위규비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간에 비행을 시작하려면 수방사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할 시간은 1시간 30분전인 21시 52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김현태특임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도, 특수항공작전단장도 22시경 대원들을 퇴근시킨 상태였다. 비행은 비행계획승인과 함께 식별부호등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아직 비행승인이 안 떨어졌고, 당연히 인천공항의 서울접근관제소(APP)로부터 레이더식별부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방사 JAOC에도 식별부호가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그에 따른 식별부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식별기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돌진해 오는 상황이 되므로 비행이 불허되고

(www.webtionary.co.kr)

10) 「일지. 비상계엄부터 윤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까지」『동아일보』(2024.12.7)

11) 「707특임단장 "'국회 내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받아"」,『한국경제』(2024.12.9)

경고방송과 조명탄이 발사되며 그래도 비행이 진행되면 급기야는 요격된다. 군항공통제부대들의 근본임무는 관제업무가 아닌 위규비행의 차단이다.[12)]

수방사 P73공역통제중대[13)]의 훈련도 위규비행에 대한 관측, 식별, 보고 및 경고사격 절차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시계비행규정」에도 비행 중 기상 등의 이유로 조종사가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레이더 감시 또는 계기비행 의사를 통보해 오면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아니므로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즉시 이를 서울접근관제소(APP)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전사령관이 헬기가 이동하지 않고 하늘에서 계속 선회만하고 있어서 화를 냈다는 증언으로 볼 때 10여분이 이륙상태에서 승인을 기다리던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항단장도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14)]고 전한다. 평소 훈련처럼 특수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비행승인을 받아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방사는 602항공대대에 비행 목적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다.[15)] 하지만 대대는 비행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수방사는 규정에 따라 계엄군의 헬기진입 허가를 1차 보류했다. 수방사의 담당대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동)목적을 계속 물어도 답하지 않아 (헬기 진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16)] 이 관계자는 헬기들의 비행제한구역 진입승인을 몇 차례나 보류

---

12) 2013년 11월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추락사건의 경우,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면서 김포공항-노들섬헬기장-잠실헬기장 회랑에 진입하며 수도방위사령부 JAOC로 관제가 이양된 뒤 P73비행금지구역을 피해 한강남안을 따라 비행하다 짙은 안개로 항로를 이탈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관제목적은 P73구역으로의 진입방지가 목적이지 일반적인 민항기의 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또한 민항기를 과하게 관제할 경우 항공사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나무위키』, (2024.11.13.) https://namu.wiki)참조

13) P73공역통제중대는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및 통제임무를 수행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이다.

14) 곽희양, 「헬기 운용 지휘관 "시동 켠 뒤 작전지역 국회라 들었다"」, 『경향신문』(2024.12.06.)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61906001

15)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긴급현안질의에서 특전사의 비행이 사전에 협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협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서(처)나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처)는 아래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계획된 활동일 3일(근무일기준) 전까지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방호과)에게 승인 요청한다.
(가) 목적 : 항공활동의 목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술.
(나) 일시(기간)/장소 : 예비일 포함/활동구역(행정구역 명칭 및 좌표)의 범위 및 고도
(다) 내용 : 항공활동의 종류, 규모(비행기기 대수 등)및 활동 횟수 등
(라) 신청/책임자 : 기관(부서) 명칭, 연락처, 담당자 성명
(마) 항공고시보(NOTAM) 또는 항공회보(AIRAD) 전파필요성 여부
(바) 기타 승인여부의 결정에 참고 될 수 있는 사항(필요시 지도.요도 및 비행기기 사진 등을 첨부)
(2)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방호과)은 승인 결과(제한사항 등)를 계획된 활동일 2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신청부서, MCRC 및 기타 관계부대(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신청자의 책임
(1) 기타 항공활동을 신청한 부서(책임자)는 기타 항공활동 시 승인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기타 항공활동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기타 항공활동이 김포공항, 서울비행장(K-16), 용산헬기장 및 활동지역 인근 비행기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항공활동 신청자가 해당기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ENR 1.2 VISUAL FLIGHT RULES",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REPUBLIC OF KOREA*, (17 NOV 2022), p.18)

16) 「'12·3 서울의 밤' 결정적 장면…성공률 80%를 막아냈다」, 『미주헤럴드경제』(2024.12.13.) https://heraldk.com/2024/12/13/

하고 합참과 육군본부에 질의한 것으로 증언했다.[17] 급기야 602항공대대가 비행승인 없이 이륙하여 비행제한구역진입을 시도하자 수방사 공역통제중대는 비상주파수를 동원하여 경고방송까지 했다. 이 경우 경고방송에 머무르지 않고 조명탄 발사를 통해 퇴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비행승인요청에서 착륙까지의 시간표를 부승찬의원이 공개한 공문과 KBS[18], MBC[19]등의 보도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	계엄군	비행통제
22:49경	602항공대대-수방사에 헬기승인요청	수방사, 비행목적 미확인으로 승인 보류
22:54	602항공대대-수방사에 승인 재요청	수방사, 승인 보류
		수방사, 합참에 질의-"관련사항 없다"
		수방사, 육본에 질의-정보작전참모부장 내용을 이해 못함
23:19	602항공대대 비행승인없이 이륙	
23:25		수방사, 602대대에 비상주파수로 비승인 비행 경고, 중앙방공통제소에 통보
23:31		수방사, 육본에 재질의-계엄사령관 비행승인,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통해 승인지시
23:31경	비행협조센터에 진입보고 미실행	중앙방공통제소, 정지명령
23:43	602항공대대 한강 청담대교 진입	
23:49	602대대 1번 헬기 국회운동장 착륙	

표1 계엄군헬기의 비행시간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에 의하면 긴급출동 등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2시간 전에 비행계획제출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제184조에 의하면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는 비행계획이 제출되지도,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비행계획변경조치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수방사는 특전사의 기동을 60분 정도 지연시켰다. 그러나 규정대로 했다면 120분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단계까지는 위규비행을 한 특전사와 비행승인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방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4) 비행협조센터 가디언의 60분

다음 단계는 비행제한구역R75 진입이 허용된 23시 31분경부터이다. 비행제한구역R75 비행을 승인받은 헬기조종사나 부대는 이륙 60분전까지 비행계획서를 서울공항에 있는 미군부대 비행협조센터-가디언(FCC-Guardian)[20] 및 김포항공 정보실에 제출해야 한다. 비행계획제

17) 부승찬의원이 공개한 공문에서는 602항공대대가 신청을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18) 「42분 지연된 계엄군 헬기 진입…그날 수방사에서는?」, 『KBS』, (2024.12.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8453
19) 「미승인 헬기 국회 향하자‥"'비상주파수'까지 동원해 경고"」, 『MBC뉴스데스크』, (2024.12.17.) https://www.youtube.com/watch?v=ZTElTEykNPg
20) 비행협조센터(FCC)는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실시간 항공관제, 비행추적 및 비행정보 제공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다.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추적을 담당하는 비행협조센터는 5개가 있다.(Go Nee, Lee, Crane, Lighthouse, Guardian) 이 중 고니, 리, 크레인, 라이트하우스는 한국군부대이며 가디언은 미군부대이다. 철원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P518비행금지구역은 비행협조센터-고니(FCC GONEE)와, 동부지역은 비행협조센터-리(FCC LEE)와 교신해야 한다.(『

출을 통해 R75시계비행로 진입 전에 한·미육군 헬기조종사는 비행협조센터-가디언과 교신해야 하고, 동시에 오산미공군기지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동되어 레이더 및 통신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협조센터는 육군항공교통통제기관인 비행작전부대의 하위기관이다. 비행작전부대에 항공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전파하며, 책임구역 내의 항공기를 통제하고 통제 중인 항공기에 경고방송을 발령하는 등 비행작전부대의 통신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운영된다.[21] 미군의 가디언 비행정보센터(GUARDIAN AIC)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헬기가 제출한 비행계획과 달리 15분 지체되었다면, 혹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다 위치보고 후 10분이 초과되었다면, 비행협조센터는 즉시 통신탐색을 개시한다. 30분 지체되었다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45분이 지체되었다면 실종임을 담당기관에 통보한다.

가디언 비행정보센터와 그 상위부대인 비행작전본부는 비행계획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권한이 없다. 이 경우 수방사에 의해 비행승인이 되었다는 전제아래 비행계획을 접수한다. 그러나 비행작전본부는 비행계획정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실수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22] 시계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비행정보센터가 보고를 요구하면 조종사는 해야 한다.[23] 그렇다면 R75비행제한구역 시계비행로·한강회랑진입 후 비행협조센터가 보고를 요청할 위규비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자.[24]

첫째, 비행승인된 헬기는 서울접근관제소(APP)로부터 레이더식별코드를 부여받고 수방사 역시 이 식별코드를 통보받은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비행제한구역R75 진입 전에 할당된 레이더식별코드를 장입하여 비행협조센터와 중앙방공통제소와 교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행승인을 한 계엄사에는 이런 비행절차를 실행할 실무자가 없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둘째, 비행제한구역R75에서의 야간비행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단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산불 및 화재의 진화, 응급 환자의 수송 등 구조활동,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공익목적의 긴급한 경우와 군사작전(지형숙지 비행 포함)의 경우는 제외된다. 수방사가 비행목적을 거듭 질문했던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UNC-CFC-USFK-Reg-95-3』, KTZ-P518-Flight-Procedures, 한국전술구역비행절차) K-16이라고도 알려진 서울공군기지의 가디언-비행정보센터(GUARDIAN-AIC)는 캠프 험프리스의 4-58비행작전대대(AOB)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 이 부대는 또한 P73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용산 VIP헬기장도 감독한다.(Bob McElroy, "4-58th Airfield Operations Battalion the Air Traffic Control Unit of the Year", *IMCOM,* (March 21, 2017)

비행정보센터(AIC)란 명칭은 야전교범100-103에 의해 미 전술 비행작전본부(FOC)에서 변경된 것이다. "가디언-비행정보센터"(GUARDIAN-AIC)는 한반도 내 지상고도 600피트(182미터)이하에서 비행작전을 수행하는 미육군 항공기의 주 통제부서이며, 1개의 비행협조센터(FCC GUARDIAN)를 운용하고 있다.(UNC/CFC/USFK REG 95-14, (3 August 2010), p.5) 그러나 5개의 비행협조센터는 물론 중앙방공통제소의 데이터는 모두 연동되어 공유된다.

21) https://wordrow.kr 홍천 군헬기 추락사고 시 등대역할을 하는 '비행협조센터'가 있었지만, 기상파악을 요청하는 조종사의 문의가 없어 기상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다.(「군헬기 추락 원인은 기상악화… 내일 영결식」,『SBS 8시뉴스』, (2008.02.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7984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2) UNC/CFC/USFK REG 95-14, (3 August 2010), p.6

23) UNC/CFC/USFK REG 95-14, (3 August 2010), p.5

24) 이하는 다음을 참조한다. "ENR 1.2 VISUAL FLIGHT RULES",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REPUBLIC OF KOREA*, (17 NOV 2022), p.3

비행제한구역R75에서의 야간비행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수방사는 비행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때문에 계엄사가 불법승인한 비행이었더라도 야간비행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셈이다.

셋째, 잠실헬기장-노들섬헬기장-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헬기는 용산헬기장 입출항 헬기와의 공중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중경계를 철저히 한다. 월요일~금요일의 주간(07:00~20:00)에는 용산관제탑과 교신해야 하며, 주말·주일·평일 야간에는 비행협조센터 가디언과 교신해야 한다. 계엄군의 한강회랑비행은 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비행협조센터 가디언과 교신을 유지했어야 한다. 이처럼 시계비행로의 비행과 소위 한강회랑에서의 야간비행 모두 비행협조센터 가디언과의 레이더 통신접촉이 이루어져야 했다. 비행협조센터와의 통신접촉이 없었다면 이 역시 위규비행에 해당한다.

넷째, 시계비행로의 기상제한치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기상기준을 적용한다. 12월 3일 김포공항기준,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시정은 800m 이하였고, 급변풍, 즉 돌풍이 일어나고 있었다.[25] 저시정경고기준은 400m이하지만, 잠실헬기장-노들섬헬기장-김포공항간 기상최저치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E등급 공역에서의 시계비행 기상최저치인 시정 4.8km(3마일)이다.[26] 한강회랑이 김포공항의 기상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기상상태였다면 비행을 위한 기상적합조건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위규비행이 된다.

다섯째, 수방사의 별도 승인시를 제외하고 동시비행은 2대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특전사 헬기는 12대였다. 비행승인은 수방사가 아닌 계엄사로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수방사의 별도 승인은 없었다. 만약 수방사의 별도승인이 없었다면 헬기12대의 야간비행은 위규비행이다.

한편 한강회랑 진입 후에도 위규비행이 계속되었다면 이어지는 비행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강회랑 진입 후 위규비행은 없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속력위반이다. 평소 특항단에서 국회까지의 비행소요시간은 15~20분이었다고 한다.[27] 이천 특수전사령부로부터 비행제한구역 진입지점인 청담대교까지는 약40km이다. UH-60 블랙호크헬기의 최대속력인 시속294km로 계산하면 1분당 약50km를 갈 수 있지만 당시 707특임단이 탄 헬기의 평균속력은 시속114km(40km÷0.35)였다. 문제는 비행제한구역 진입 이후의 속력이다. 청담대교에서 한강남안을 따라 비행하면 국회운동장까지 약17km이다. 국회운동장에 6분 만인 23시 49분경 1번 헬기가 첫 착륙했으므로 평균속력은 시속 170km(17km÷0.1)였다. 이는 한강회랑에서 규정된 비행속력인 시속148km를 초과한 속력이었다.[28] 착륙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한강회랑비행은 시속170km를 훨씬 초과했을 것이다.

둘째, 한강회랑에서의 비행은 한강 중심선에서 남쪽 강변 상공으로만 비행하여야 한다. 노들섬헬기장 이·착륙시와 용산관제탑 유도 하에만 강안 북쪽 상공 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12대의 헬기가 이천까지 두 번을 오가며 총 24번 비행했기에 하류방향비행과 상류방향비행이

---

25) 「항공교통기상정보, atm_fct_2024120316_06.pdf」, (항공기상청 예보과) (2024.12.3)

26)"ENR 1.2 VISUAL FLIGHT RULES",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REPUBLIC OF KOREA*, (17 NOV 2022), p.15

27) 윤예솔, 「특항단 "테러났나 짐작하며 계엄군 이송… 뉴스 본 뒤 충격"」, 『국민일보』(2024.12.1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3730994

28) "ENR 1.2 VISUAL FLIGHT RULES",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REPUBLIC OF KOREA*, (17 NOV 2022), p.3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행안전을 위해 한강중심선을 넘어 한강북안을 비행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이 역시 위규비행이다.

이처럼 특전사헬기는 계엄사로부터 위법한 비행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승인에 따르는 실무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위규비행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비행협조센터와 중앙방공통제소에 당연히 인지될 수밖에 없었다. 특항단 조종사 A씨는 헬기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려 하자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시스템을 통해 '헬기들을 잠깐 멈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29] 이로서 가디언-비행정보센터와 중앙방공통제소는 이 헬기비행을 인지했음이 확인된다. 규정대로라면 비행협조센터-가디언은 비행이 승인된 23시 31분부터 60분 뒤인 24시 31분까지 절차에 따라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준법비행을 지시할 수 있었다. 또 노탐(NOTAM: Notice to Air Missions)을 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탐은 매번 비행을 나가기 전에 조종사와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배포하는 공고문이다. 비행제한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일시적 공역제한을 긴급하게 공고할 수 있는 것이다. 긴급시가 아닌 경우는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훈련에 따른 일시적 공역제한은 3일 이전이다. 그러나 이는 긴급하지 않을 때이다. 긴급하다면 7일이나 3일을 따지지 않고 바로 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탐은 비행협조센터를 통해 발령되지만 최종인가권자는 미8군 작전참모부 항공교통관제 업무조정실 총장이다.[30] 평택 캠프 험프리스 4-58비행작전대대(AOB)산하 부대인 서울공항의 비행협조센터-가디언과 가디언 비행정보센터는 규정에 따른 절차만으로 계엄군 헬기를 60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5) 중앙방공통제소의 시간

특전사 특수항공작전단이 가디언 비행정보센터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교신을 회피하며 위규비행을 한다면 중앙방공통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의 감시·추적·통제가 실시된다. 중앙방공통제소를 운영하는 부대는 공군항공관제부대이다. 이들은 오산공군기지의 제1중앙방공통제소(1MCRC)와 대구공군기지의 제2중앙방공통제소(제2MCRC)를 운영한다. 이들은 전국에 위치한 레이더사이트에서 항적정보를 받으며 데이터링크를 통해 MCRC간에도 상호공유한다. 항적정보만이 아니라 해군의 해군전술정보체계(KNTDS)와도 연동된다. 대통령실 지하벙커도 MCRC의 화면을 받아온다. 오산의 1MCRC는 유럽의 나토사령부와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일정보협정에 따라 일본의 미사일경보체계와도 연동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방공통제소의 감시수는 항로 및 이상징후 등을 추적·감시한다. 식별수는 포착된 항적을 수분내로 식별한다. 항공통제사는 미식별기, 적기를 뜻하는 Bogey로 선포하고, 침투로 판단시 계획된 전술조치를 실행하는 요격통제임무를 수행한다. 중앙방공통제소는 한미연합군이 함께 근무하며 고도에 따라 공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31]

중앙방공통제소에는 서울의 P73비행금지공역을 전담하는 공역내 임무항공무기통제사(WD: Weapon Director)장교[32]와 항공무기부사관(WT: Weapon Technician)이 근무하고 있다. 옆

---

29) 윤예솔, 「특항단 "테러났나 짐작하며 계엄군 이송… 뉴스 본 뒤 충격"」, 『국민일보』(2024.12.1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3730994

30) 「UNC/CFC/USFK Reg95-14」 Flight Information and Flight Following Services, (3 August 2010), p.3

31) 김상윤, 「24시간 빛나는 눈, 한반도 영공을 완벽 통제합니다」, 『국방일보』(2018.3.28.)참조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0329/1/ATCE_CTGR_0020050041/view.d

에 앉아 있는 WT는 MCRC의 통제대장(SD: Senior Director)을 포함하여 공군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수방사, 비행중인 비공군계 항공기를 통제하는 인천ACC(Area Control Center)에 상황을 공유하고 보고 받는 일을 한다. 그들의 임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무기배정장교(WAO: Weapon Assignment Officer)가 있고 그 위에 선임무기배정장교(SWAO: Senior Weapon Assignment Officer)가 있다.[33)]

P73비행금지구역 담당은 통상적으로 완숙한 수준의 기량을 보유한 WD가 맡게 되는데, 수도권 방위라는 고유한 역할이 가지는 어려움 때문이다. WD는 비행계획이 없는 비행체가 접근할 경우 곧바로 경고방송을 주파수로 내보낸다. 청담대교 진입 전 602항공대대 헬기에 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WD로 보인다. 중앙방공통제소의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한다. 적국 전투기들은 고속으로 남하해 눈 깜짝할 새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방공통제소 근무요원들은 1분, 1초도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고 한 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하다.[34)] WD는 유사상황이 벌어지면 인근 공군기지에서 출동한 전투기를 할당받아 헬기에 대한 요격관제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12월 3일의 상황은 WD에겐 기술적으로 긴급하지 않았지만 계엄발표 1시간 뒤여서 정치적으로는 긴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는 WD가 조치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이제 중앙방공통제소의 임무는 오산기지 내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의 한미연합지휘부로 넘어가야 했을 것이다.

6)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시간

전작권이 한국 측으로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육·해군과 달리 공군의 구성군사령관 직위는 미국 측에 남는다. 공군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정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자율성을 보장받은 육군과 다르게 정전시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시를 받는다. 이를 위해 예하 부서들이 한미 공군의 연합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최상위 작전사령부로,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공군작전사령부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KADIZ)내의 모든 항적을 추적, 감시하고 공중 및 항공자산을 통제, 운영하고 있다. 항공관제사령부 소속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 Air Space Operations Center)[35)]와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직속부대이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의 작전참모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미연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내의 모든 공군작전 및 항공분야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총괄한다.[36)]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공역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정보가 한미연합으로 편성된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전투지휘소(Top Dais)로 보고되고, 정찰·방어·공격 등

---

32) 이한성, 「행위자 기반 항공 트래픽 시뮬레이션 활용사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논문, 2017) 참조

33) 양승훈, 「p-73와 내란」, 『뉴스웨이』(2024.12.11.)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121114271645189

34) https://blog.naver.com/wami98/222667746932

35) 항공우주작전본부의 비공식 별칭은 “벙커”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과 방문하여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36) https://namu.wiki/w/%EA%B3%B5%EA%B5%B0%EC%9E%91%EC%A0%84%EC%82%AC%EB%A0%B9%EB%B6%80

공중작전 지휘·통제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정보는 연합사와 직접 공유된다.[37] 한미연합사령관이 계엄정보를 사전에 몰랐더라도 이미 계엄포고로부터 1시간이나 흘렀고 특전사 헬기의 위규비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항공우주작전본부의 한미지휘부는 얼마든지 비행시간을 지연시키고 정지시키고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내정간섭 같은 내용차원과는 무관한 비행형식차원의 조치였기에 내정간섭의 비난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조치였다. 그러나 한미연합공군은 정확히 이들의 위규비행을 인지했음에도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한미연합공군에겐 행정부작위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의심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란방조의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그러한 효과는 무서운 현실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7) 결론

이천에서 청담대교 진입까지 비행제한구역 비행승인 절차는 분명 수방사와 특전사, 계엄사가 책임을 질 영역이다. 그러나 청담대교부터 국회운동장까지의 위규비행에 대해서는 미군부대인 가디언 비행정보센터와 한미연합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의 책임영역이라고 의심된다. 「시계비행규칙」이 정한 규정대로 했다면 이천에서 청담대교까지 2시간을, 청담대교에서 국회까지 1시간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한미연합공군에 의해 계엄군의 위규비행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법적지위를 가지고 행정적 작위에 의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미군은 방관하고 방조했다. 미국이 계엄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도 실제행동은 달랐다. 미군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의심된다.

3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96685?sid=100